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 2018.06.28. 개정 2018.12.04. 개정 2019.02.25. 개정 2019.09.16. 개정 2020.02.27.
개정 2026.03.2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직원(기능직포함)에 대한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보 수

제3조 (보수의 구분)

교직원의 보수는 기본급(본봉)과 제수당으로 구분한다.

제4조 (기본급료)

교직원의 기본급(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표를 준용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06.28.>

제5조 (휴직중인 자의 보수)

휴직중인 교직원에 대하여는 휴직의 구분에 따라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제6조 (보수의 계산)

- ① 보수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② 신규임용, 승진임용 또는 신 보직자의 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7조 (보수의 지급일)

봉급 및 제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 <삭제 2019.09.16.>

제3장 제수당

제9조 (제수당)

교직원의 제수당은 일반수당, 특별수당, 상여수당, 기타수당으로 구분한다.

제10조 (제수당의 지급)

제수당은 월별지급, 분기별지급, 수시지급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장기 해외여행 및 질병으로 인하여 타인이 직무대리 및 고유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을 아니 할 수도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하여 상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일반수당)

일반수당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① <개정 2018.06.28.><삭제 2020.02.27.>

② 가족수당은 본교 교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다만, 취학이나 근무 형편 등에 따라 교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하며,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19세 미만자녀, 19세 이상의 자녀 중 장애 및 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부모(여자 55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 및 폐질환자인 경우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19세 이상의 형제자매 중 장애 및 폐질환자인 경우 4인 이내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7.01.01., 2017.11.28., 2018.06.28.>

③ 가족수당을 받고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부양가족 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되 교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가 발생할 즉시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는 지급한다.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교직원은 매년 3월 부양가족 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11.28.>

④ 연구비(교원), 행정연구비(직원)는 직급으로 구분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한다.<개정 2018.06.28.>

⑤ 급량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 정액급량비를 지급한다.<개정 2018.06.28.>

제12조 (특별수당)

① 교직원의 보직수당은 보직이 부여된 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단, 보직자가 대학내 다른 직종의 보직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09.15., 2018.06.28.><개정 2018.12.04.><개정 2019.02.25.>

- ② <삭제 2019.02.25.>
- ③ 연구보조비는 직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06.28.><개정 2020.02.27.>
- ④ 교직원의 직무수당은 일정한 자격이나 담당업무 특성상 특이성이 요구되어 책임이 부여되는 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18. 06.28.><개정 2018.12.04.>
- ⑤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구분하여 매월 지급한다.<신설 2018.06.28.>
- ⑥ <신설 2018.06.28.><개정 2018.12 .04.><삭제 2020.02.27.>
- ⑦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외 근무를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신설 2018.06.28.>
- ⑧ 출납수당은 금전출납업무를 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한다.<신설 2018.06.28.>
- ⑨ <삭제 2018.12.04.>
- ⑩ 기술업무수당은 건축, 방사선, 전산, 사서 등 업무 및 자격별로 구분하여 매월 지급한다. <신설 2018.06.28.>
- ⑪ 특별성과급은 대학의 대,내외 평가를 위한 업무에 참여할 경우 공로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06.28.>
- ⑫ 교원 특별수당은 취업률이 우수한 학과 교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06.28.>
- ⑬ 이 규정이 정하는 특별수당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06.28.>

제13조 (상여수당)

상여수당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① <삭제 2006.03.01>
- ② <삭제 2011.03.01.>
- ③ 효도휴가비는 당해 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하여 연 2회 지급한다.
<신설 2026.03.26.>
- ④ 정근수당은 1월, 7월에 근무연수(호봉)에 의거 기본급의 0%~50%를 지급한다.
<신설 2026.03.26.>
- ⑤ <삭제 2011.03.01.>

제14조 (기타수당)

기타수당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①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기능직을 포함하되 일용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총장이 예산 범위안에서 1분기 3월, 2분기 6월, 3분기 9월, 4분기 12월에 자녀학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의무교육 대상학교 및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학중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퇴학, 전학 등)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04.>
- ② 국내대학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 1인에 한하여 대학 등록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국외대학에 취학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총장

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1.1.><개정 2018.12.04.>

- ③ 자녀학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수업료 납부 영수증 첨부)를 총장에게 제출 신고하여야 하고, 지급액은 매 연도별 총장이 정하고 본 교에 임용된지 3개월 이내인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입시 수당은 입학 또는 입시홍보 업무를 수행(지원)하는 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06.28.>
- ⑤ 이 규정이 정하는 기타수당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
-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장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1.1>
 1. 교원은 교원업적평가 총점이 95 점 이상이며, 평정대상자 상위 10% 이내에 해당자
 2. 직원은 직원근무평정 총점이 95점 이상이며, 평정대상자 상위 10% 이내에 해당자
 3. 위 1,2호의 해당자가 없을 경우 총장이 우수자를 선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통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전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보수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에 자동 폐기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9.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2조 제2항 <별표1>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2조 개정조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3.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9.02.25.>